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의 충전 방해행위 등에 대한 **주민신고제 운영 내용에 대해 일부 변경**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3일

파 주 시 장

1. 행정예고 목적

산업통상부 고시 2025-132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충전 방해행위)가 개정(2025. 8. 5.)됨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에 따른 시민 혼선을 방지하고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신고요건을 갖춰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첨부된 사진 및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인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 신고제 운영 내용에 대해 일부 변경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제16조(과태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충전방해 행위) 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및 제17조(과태료의 부과)

3. 행정예고 기간: 2025. 12. 23.(화) ~ 2026. 1. 13.(화) (22일간)

4. 행정예고 방법: 파주시청 홈페이지(www.paju.go.kr) - 정보공개 - 알림마당 - 고시/공고

5. 행정예고 내용: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가. 시행일: 2026. 2. 5.(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유예기간 반영 및 변경 내용 홍보를 위해 2026. 2. 5.(목)부터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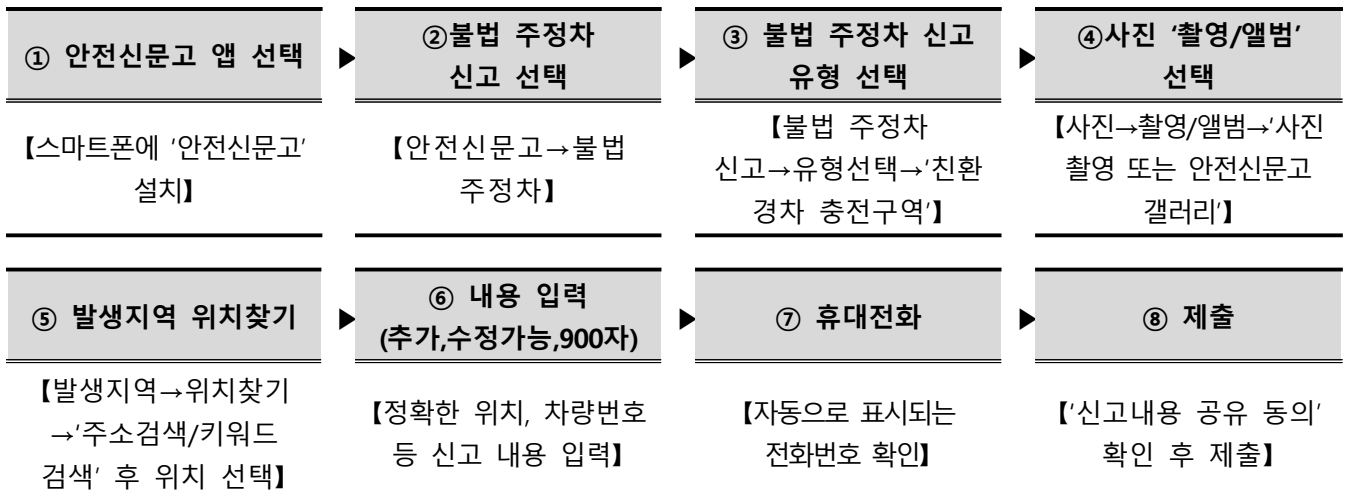
나. 변경내용

- ① 완속충전구역 내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주차 가능시간 변경
(기존) 14시간 이내 → **(변경) 7시간 이내**
- ② 공동주택 내 완속충전구역 기준시간 초과 주차 과태료 부과대상 변경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 → **(변경)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다. 신고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7항, 제8항, 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에 해당하는 충전 방해행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라. 신고방법: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마. 신고기한: 첫 촬영일시 기준 24시간 이내 신고 가능

바. 신고(접수)요건: 동일한 위치·방향에서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자료 첨부

- ① 시차 1분 이상 간격인 사진 2장 이상
- ② 전기자동차,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경우 다음과 같음

구분	충전·주차 가능시간	신고요건	단속예외
급속	1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최초 촬영사진 ② 1시간 이후 촬영사진 	*완속 충전구역 단속예외: ① 단독주택 ② 공동주택 中 연립·다세대 주택,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완속 (전기자동차)	1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최초 촬영사진 ② 5~9시간 후 촬영사진 ③ 14시간 이후 촬영사진 총 3장 또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최초 촬영사진 ② 충전시간 표기된 충전기기와 해당차량 번호판이 같이 촬영된 동영상 	
완속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	7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최초 촬영사진 ② 7시간 이후 촬영사진 총 2장 또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최초 촬영사진 ② 충전시간 표기된 충전기기와 해당차량 번호판이 같이 촬영된 동영상 	

③ 위반장소가 명확하고 신고 사진 모두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여야 함

④ 충전구역 바닥면 표시(EV, 전기자동차 등)를 통해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임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함

- ※ 주차로 해당 바닥면 표식이 보이지 않을 시 보완 사진(측면) 첨부하여 신고
- ※ 오염, 미·도색, 공사 등 바닥면 표시 명확이 확인되지 않을 시 단속 불가

⑤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 상 촬영기능을 이용 촬영한 사진, 영상이어야 함

- ※ 증빙사진에 촬영일시가 반드시 표기되어야 함
- ※ 증빙사진을 통해 대상 차량이 이동 주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사. 처리불가 신고사항

- ① 처리불가 사항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 미부과, 위반 정도 따라 계도장 발송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과태료 징수 목적이 아닌 올바른 충전문화 확산을 위함
 - 1) 차량번호 및 위반장소 식별이 어려울 경우
 - 2) 국민신문고 접수 및 개인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동영상 등 첨부 민원
 - ※ 발생위치와 신고시간이 증빙되지 않음
 - 3) 1건의 신고에 2대 이상의 다른 차량을 동시에 신고한 경우
 - ※ 2대 이상의 차량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1대씩 각각 신고
 - 4) 증빙사진에 촬영일시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
 - 5) 기타 불명확 또는 불확실한 상황·자료로서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피주사가 판단하는 경우
 - 6) 위반한 해당차량을 동일 장소, 행위에 대해 중복 신고할 경우 최초건에 대해서만 인정
 - 7) 최초 송달받은 시점 기준 이전 신고자료가 접수되었을 경우
 - ※ 동일 대상에 대한 다중신고는 위반 범위에 따라 부과권자가 중복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8) 전기자동차 완속(14시간) 및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 완속(7시간) 충전·주차 신고에 대한 증빙자료가 미흡한 경우
 - 9) 사용불가(고장 등) 충전시설에 대해 관리주체가 사전 안내 및 공지를 시행하여 일반 대중이 정상 충전구역으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 ② 이중주차 및 주차선 침범

구분	이중주차	주차선 침범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전·주차 중이지 않은 충전 구역을 가로막는 이중주차 ① 위 행위는 충전방해요소(진입·사용불가)가 될 수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 ②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선 침범 전기차 충전구역과 접해있는 주차구역에 주차 시 충전구역 주차선을 침범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전·주차 중인 충전 구역을 가로막는 이중주차 ① 사용중인 주차구역에 이중주차를 한 경우 충전방해행위(사용불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충전구역과 간격*을 둔 이중주차 *차량 한 대가 진출입 할 수 있을 정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9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8

자. 단속 예외시설 운영

① 운영 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② 운영 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의 수량이 입주자동차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PHEV)의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아파트

1) 아파트 관리주체 등이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미부과

2) 아파트 관리주체 등이 입주자 등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수량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다고 표시한 구역에 계속 주차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2호 나목에 따른 과태료 미부과

③ 운영조건: 아파트 관리주체 등이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한 구역임을 시민 및 단속공무원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명백하게 표기

차. 과태료 부과: 신고요건 구비 시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시행령 제21조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름)

카. 단속 대상 및 과태료 부과 금액 / 신고보상금 없음

구분	단속 대상	근거	과태료 부과금액
주차 위반	전기자동차,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2항 	10만원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8항 ○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2항 	10만원
충전 방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제1호 ○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1항 	10만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제2호 ○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1항 	10만원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제3호 ○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1항 	10만원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위한 주차를 시작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1시간)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제6호 ○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1항 	10만원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위한 주차를 시작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전기자동차: 14시간,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 7시간)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단속 예외시설(건축법시행령[별표1]제1호, 제2호): 단독·연립·다세대· 100세대 미만 아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제7호 ○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1항 	10만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u>*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구동축전자'를 충전하는 시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7 제1항 및 8 제1항제8호 ○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1항 	10만원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제4호 ○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1항 	20만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제5호 ○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1항 	20만원

**6. 과태료 처분 행정사항: 과태료 처분에 대한 감경 및 의견제출·이의 제기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행정절차법」을 준용함**

7. 의견제출

가.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2026. 1. 13.(화) 18:00 까지

다. 제출방법: 파주시청 에너지과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

라. 제출서식: [붙임] 참조

마. 제출처

① 우편: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47, 4층 에너지과

② 팩스: 031-940-8609

바. 문의처: 파주시청 에너지과(031-940-8498)

사. 제출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